

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

1. 검토배경

- 최근 연구비 횡령으로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내사를 받고 일부 교수가 구속되는 사태 발생
-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무조정실에서도 제도개선안 준비 중

2. 연구비 유용사건의 발생원인

- 일부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로 연구비 횡령 등 위법 사례 발생
- 실제 연구현장의 연구비 집행 상 따르기 어려운 연구비 관리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한 제도적인 문제점
- 연구비로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검수제도 미비

3.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추진 경과

-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T/F 팀 운영 중(04.4월부터 정보과기보좌관실)
 -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연구용역 및 관련부처 협의
 - ※ 학술진흥재단, 과학재단, 산업기술평가원 등 7개 부처의 연구개발관리기관의 정책담당자 참여
 - 정책화된 내용은 과기부, 교육부, 산자부, 환경부, 복지부 등의 관련 부처 국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협의
- 『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』 개정(05.3.8)에 일부 내용 반영 및 하반기 추가 개정과 지속적인 제도개선 연구 중

4. 연구비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현황

기자재 구입비와 대학원생 인건비 등을 전용하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관리제도를 현실화하고, 이후 대학과 연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

① 연구실 운영경비 불인정 문제

- 에어컨, 책상, 의자, 컴퓨터 등 연구실 운영에 필수적인 비품구입 등의 경비를 연구비에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비 전용의 원인 제공
- ➔ 연구실 운영경비의 실비를 연구비(수용비)로 처리 가능하도록 『국가연구개발공동관리규정』 개정 완료('05.3.8) 후 6월1일부터 기 실시

②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재분배 문제

- 실제 대학 연구실은 여러 부처로부터 연구과제를 수주하여 대학원생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, 인건비 지급방식은 개별과제의 개별 참여 연구원에게 매월 일정액을 통장에 직접 입금하도록 되어 있음
- 대학원생의 등록금 지원 등을 위해 개별학생에게 입금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등록금과 월급으로 나누어 재분배하는 관행 발생
- 연구비 전용으로 지적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됨
- ➔ 『연구수당 풀링제』를 도입하여 인건비 전용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목표로 '05년 하반기에 시범사업 실시 예정
- 인건비를 연구책임자의 구좌로 풀링(pooling) 한 후 필요시 교수가 대학본부에 연구수당을 지급요청하고, 대학본부가 학생에게 직접 지급

③ 연구기자재 구입 시 허위영수증 제출문제

- 정부 및 기업의 연구비로 기자재를 구입할 때 **검수 확인 없이 영수증 제출만으로 처리하기** 때문에 허위영수증 제출의 여지가 발생
 - ➔ 대학이 연구기자재 구입 시 **자체적으로 검수**하고, 정부는 관리시스템을 확인해주는 『**연구비관리인증제도**』 (‘05.3.8 규정 개정) 도입
 - 기관 인증 시 기자재 구입의 구매부서 경유, 자산관리등록 유무 등을 평가하여 기자재 허위영수증 제출 원인을 원천적으로 해소

④ 연구수행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문제

- 연구비 관리 규정상 월급을 받는 교수는 연구비에서 추가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
 - ※ 국립대 교수의 경우 인건비를 인정하게 되면 인건비 이중지급에 해당됨
 - ※ 미국 대학의 경우 교수 월급이 9개월로 책정되어 있어 3개월은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지급 가능
- ➔ 연구수행에 따른 인센티브와 필요경비를 충당하도록 연구활동 진흥비를 7%에서 15%로 **상향조정**(‘05.3.8 규정 개정)하여 6월1일부터 기 실시

⑤ 연구비 잔액 처리문제

-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잔액을 전액 회수하고 있으므로 연구비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,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재분배하는 과정이나 혹은 허위영수증을 활용하여 연구비를 비축하는 사례 발생
 - ➔ 대학원생의 지속적인 연구수당 지원을 위해 인건비에 한해 지급기간을 6개월 혹은 1년 정도 연장 필요

- 기간 연장 문제는 기획예산처의 회계제도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, 연구비 중 인건비 잔액은 연구책임자가 소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관리제도에 반영할 필요

5. 검토의견

- 연구비 유용의 관행이 제도의 미흡에서 일부 초래된 측면도 있으므로 교수, 대학원생, 연구관리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존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
- 제도상의 문제를 보완한 이후에는 연구비 유용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과 분위기 조성 필요